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7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 개정 이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록 업무 수행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창투자 등록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처리 대상에 창투자 등록에 관한 사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8953, Fax : 042-481-4418)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명)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p> <p>① 중소기업청장(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호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u><신 설></u></p>	<p>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p> <p>① 중소기업청장(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호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p>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2) 481 - 4422